



## 기준2

## 실습지원비



산학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67호, 2021. 6. 15., 일부개정]

###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 ②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⑤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지급 의무 및 범위

○ 지급 의무

- 이전 운영규정에서는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급 원칙보다 협의 단서를 우선시 하여 실질적으로 무급 또는 저비용 실습지원비로 운영되었습니다.
-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개정된 산학협력법 시행령에서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개정된 운영규정은 산학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실습지원비의 포함 범위

- 실습지원비는 금전으로 제공되는 것만을 실습지원비의 인정 범위로 합니다.
- 따라서 금전으로 제공되지 않는 식사 제공(식사 쿠폰 포함),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현물 지원사항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물 지원사항을 실습지원비로 환산 또는 계상하면 안 됩니다.
- 일부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를 학교를 통해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습지원비는 대가성이 있는 금전이므로 이를 장학금 형태로 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학교 교비로 학생에게 지원하는 금전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 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재정지원사업 등의 국고 외 **학교의 교비**로 학생에게 일종의 지원금 명목인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장학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학교에서 교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을 포함한 금전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학금이 학생 대상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의 실적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장학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학생들에게 활동지원 명목 또는 학생 참여 독려 측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으로 지급주체가 중요합니다.

열정페이,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이 바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지급주체 문제로 실습기관에서 지급하지 않는 지원금 등의 모든 금전은 실습지원비와 무관한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대학정보공시 현황 조사 기준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정 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금전이 아닌 학교에서 지급한 재정지원사업 예산 또는 장학금 등의 교비 예산으로 지급한 금전을 실습지원비로 포함하여 산정한 학교가 있다면, 앞으로는 실습기관에서 지급한 실습지원비만을 집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출기준 및 지급기준

○ 산출기준

- 기존 현장실습에서 발생하였던 실습지원비의 문제점은 우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실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습지원비 관련 민원사항은 실습지원비 금액 수준 외 주휴수당과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는 과거에 현장실습의 형태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근래에는 실제 실습기관의 근로 환경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으며, 학생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는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는 기준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유급휴일은 실습지원비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그리고 산출기준 마련 시 임의적 기준 수립이 아닌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비교 잣대로 두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기준을 참고하여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이 되는 실습시간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에 따른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실습시간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 단위로 실습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실습시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text{일 실습시간 수} \times \text{주 실습일수} + \text{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월 단위로 실습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실습시간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text{주 단위 실습시간 수}^* \div 7) \times (365 \div 12) \text{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text{주 단위 실습시간 수} = (\text{일 실습시간 수} \times \text{주 실습일수} + \text{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해당 계산식에 실습기관과 확정된 일 실습시간 수, 주 실습일수 등의 값을 입력하면 주 단위 및 월 단위 실습시간이 산출되며, 실제 실습기관의 근로제 및 전일제 형태의 값을 입력하면 산출됩니다.

○ 지급기준

- 지급기준은 앞서 산출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실습시간에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은 아래와 같이 비율 값 '1'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뺀 값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이에 주 단위 실습지원비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주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산출기준'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

- 월 단위로 실습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월 단위 실습시간 수는 상기'산출기준'에 기재된 산식을 따름

- 만약 1주 기준 5시간 한도로 연장실습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연장실습이 야간시간까지 이뤄지는 경우 포함)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

- 이와 같이 연장실습에 대해서는 정규 실습시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습지원비 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로 실제 이뤄지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사전에 학교와 실습기관이 상호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전체 실습시간의 10% ~ 25%이므로 명확한 교육시간에 관한 상호 확인 없이 교육시간 비율의 최대값인 25%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25%일 경우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값을 0.75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기준**이므로, 실제 실습기관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5%일 경우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값은 0.85로 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값이 0.75라는 것은 실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도 및 교육하는 시간이 매일 2시간(1일 8시간 기준) 혹은 평균적으로 매일 2시간 정도의 교육시간이 배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경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러한 여러 어려움 등에 기초하여 앞서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 제도가 궁금한 경우 제2장 제1절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원칙 - [원칙\_6] 실습지원비 지급 부분'의 세액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산출 시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Case1)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times 5 + 8) = \underline{48\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313,920\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5 + 8) \div 7] \times (365 \div 12) = 208.57 \approx 209\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1,366,860\text{원/월}$

(Case2) 1일 8시간, 주 4일, 교육시간 1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해당 실습기관의 근로형태가 주 4일인 경우)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times 4 + 8) = \underline{40\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0\text{시간} \times 0.85 \times 8,720\text{원} = 296,480\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4 + 8) \div 7] \times (365 \div 12) = 173.81 \approx \underline{174\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74\text{시간} \times 0.85 \times 8,720\text{원} = 1,289,688\text{원/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산출 시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Case3) 1일 7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7 \times 5 + 7) = 42\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2\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274,680\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7 \times 5 + 7) \div 7] \times (365 \div 12) = 182.5 \approx 183\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83\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1,196,820\text{원/월}$

(Case4) 1일 6시간, 주 6일, 교육시간 1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6 \times 6 + 6) = 42\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2\text{시간} \times 0.85 \times 8,720\text{원} = 311,304\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4 + 8) \div 7] \times (365 \div 12) = 173.81 \approx 174\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74\text{시간} \times 0.85 \times 8,720\text{원} = 1,289,688\text{원/월}$

##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 기준1 운영기간 및 시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기간 및 시간

##### ○ 자율적 운영기간 및 시간 설정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른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에 따른 연속적 운영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율”이라는 용어와 같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상황 및 여건, 필요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시간으로 자유롭게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즉, 학교에서 목적으로 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별 학기 기간 내에서 1주 기준 1일 혹은 2~3일, 실습일 기준 1~3시간 등의 운영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동일하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에 기반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교육시간 비율 10% ~ 25%)와는 달리 실제 직무수행 시간 비율이 낮고, 교육 및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교육시간 비율 25% 초과)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실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2

## 실습지원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1. 7. 6.]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2021. 7. 6., 전부개정]

####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II. [학교용] 현장실습 학기제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 ○ 지급 원칙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같이 실습지원비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및 지급기준에 따른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

-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높게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해당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른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 그리고 실습시간이 1주 기준 15시간 미만인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른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실습지원비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급휴일 등으로 지원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급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실제 산출 사례를 살펴보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동일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어도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상당한 실습지원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라 하더라도 교육시간 비율은 실제 실습기관에서 학생을 위해 투입하는 교육 및 지도 등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 (Case1)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5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times 5 + 8) = \mathbf{48\text{시간}}$

#####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text{시간} \times 0.5 \times 8,720\text{원} = 209,280\text{원/주}$   
※ 교육시간 25%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13,920원/주 대비 67% 수준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5 + 8) \div 7] \times (365 \div 12) = 208.57 \approx \mathbf{209\text{시간}}$

#####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text{시간} \times 0.5 \times 8,720\text{원} = 911,240\text{원/월}$   
※ 교육시간 25%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366,860원/월 대비 67% 수준

#### (Case2) 1일 6시간, 주 5일, 교육시간 4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6 \times 5 + 6) = \mathbf{36\text{시간}}$

#####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36\text{시간} \times 0.6 \times 8,720\text{원} = 188,352\text{원/주}$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6 \times 5 + 6) \div 7] \times (365 \div 12) = 156.43 \approx \mathbf{157\text{시간}}$

#####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7\text{시간} \times 0.6 \times 8,720\text{원} = 821,424\text{원/월}$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Case3) 1일 4시간, 주 5일, 교육시간 4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4 \times 5 + 4) = 24$ 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4시간 × 0.6 × 8,720원 = 125,568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4 \times 5 + 4) \div 7] \times (365 \div 12) = 104.29 \approx 105$ 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05시간 × 0.6 × 8,720원 = 549,360원/월

(Case4) 1일 3시간, 주 4일, 교육시간 3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3 \times 4 + 0) = 12$ 시간

※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 1일의 유급휴일 시간 미적용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2시간 × 0.7 × 8,720원 = 73,248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3 \times 4 + 0) \div 7] \times (365 \div 12) = 52.14 \approx 53$ 시간

※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 1일의 유급휴일 시간 미적용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53시간 × 0.7 × 8,720원 = 323,512원/월



##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

- 기존 현장실습에서는 실습기관의 상황과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는 이유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무급 현장실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이 “0”인 경우로, **전체 실습시간이 직무 관련 교육시간으로 구성되는 경우**입니다.
- 기본적인 틀은 북미권 국가의 노동관계 법·제도 및 일통합학습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총 8개의 기준이 있으며 8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①전공관련성(필요성, 환경 및 여건), ②수업요건 구비, ③학업 성취 제공, ④학생 유익성, ⑤일상 업무 금지, ⑥간접 체험 형태 운영, ⑦학생의 사전 동의, ⑧단기간 내 단시간 운영입니다.
- ① ~ ④는 기본적인 현장실습학기제의 요건이므로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⑤, ⑥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명확한 운영계획이나 교육 및 지도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⑥의 요건에 대한 학교의 명확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해당 무급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일상 업무수행과 일회성 직접 업무체험을 제외할 경우 100% 교육과 지도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실습기간은 2개월 이하로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에서는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⑤, ⑥의 요건인 점을 확인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